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래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제명 등의 개정과 함께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13항과 14항을 신설하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을 위해 1일의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